

분야	세부공약	최종평가	평가근거 (서술)
정치선진화			
1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X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19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11차례 제출.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4차례에 불과. 부결된 경우는 2건, 철회 2건임.
2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X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소위 상정되지 않음. 19대 국회 들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의원이 5명. 의원직을 상실하게 전까지 수당과 활동비는 모두 지급받음

3	○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회부제 도입 -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	2012년 국회법 개정 처리 불구, 19대 국회 막바지에 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 위한 국회법 재개정 추진.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 마비' 등 비난 공세
---	---	---	--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1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조사 실시 -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X	새누리당 법안 발의했으나 논의 진척 없음
---	---	---	------------------------

2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현저성 요건 삭제)	△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공약에서 후퇴
3	○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 공시의무대상 확대(동일인, 친족지분 축소 등), 공시내용 구체화 (거래조건「수의, 경쟁입찰 여부」등) -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발표('12.2월)이전 '11.12월 이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반영된 내용

경제민주화 - 대기업 업종진출과 불공정행위 규제

1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X	법안은 발의했으나 진척사항 없음
2	○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	2013.4.30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제를 부당단가인하 등으로 일부 확대함.

3	○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X	법안은 발의했으나 진척사항 없음
4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가맹본부의 리뉴얼, 매장확장의 강요 및 비용부담 전가 금지 : 인테리어 리뉴얼 요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공동 부담 의무화(예, 가맹사업자의 부담비율의 경우 50% 초과 금지) -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의무화 -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강화 : 과거,장래 예상매출액등 예산수익상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약 이행. 단,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가맹점주 부담비율은 60~80%로 조정/ 시행령 개정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예정지 인근 10개점 정보제공 의무화함
5	○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 법 적용 대상 요건 강화 : 연간 매출액(5천만원 이상)외에 가맹점 수(5개 이상) 요건 추가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 : 2개월→4개월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약 이행.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의무화하지 않음

경제민주화 - 재벌총수 일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1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X	2013.2.19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사면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조성되면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 불리한 불리한 입법논의는 실종/ 최태원 SK회장 ·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재벌총수 및 경제인 14인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경제민주화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1	○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	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에서 공공기관 법인카드 직불카드 의무화 시범실시 의결. 정부 방침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직불카드 사용의무화 방침 및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안 발표해 시행 중
2	○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	△	현재까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공약 이행 안됨. 정부-새누리당 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영세·중소 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낮추고 각각의 카드수수료율 상한선 인하안을 담은 감독규정 마련. 그러나 카드사에서 연매출 10억원이하 일반가맹점 30여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기습 인상 통보했으나 정부 대책 미흡

3	○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 진입 금지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진입허용은 가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 요구	X	2013-01-01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역협의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공약의 핵심이었던 대형유통업체 입점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대선 공약으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음.
4	○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 나들가게처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현대식점포사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정비사업은 지자체, 중기청 등이 계속 추진 중
5	○ 자금 지원 강화 -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	2015년 12월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 정책 발표.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연장
6	○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	2013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상향 방안 마련. 2016년 적용될 세법개정을 통해 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7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구입 의무화	○	중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86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달성. 경기위축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10%의무화 정책 독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금융기관 등도 구매 동참
8	○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전통시장 전용 택배 담당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X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일부 시장은 대기업택배사와 연계
9	○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 상인참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상인극단, 상인합창단 등) -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등) - 문화환경 조성(지역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공미술, '공치극장' 개설운영 등)	△	2012년 중기청이 전국 24개 전통시장,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명소시장 육성 방안 및 예산 지원 계획 발표에 이어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발표 등 진행.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14.10)을 마련, 3대 특성화(골목, 문화관광, 글로벌) 시장 육성(‘15.160 → ‘17.375곳 목표) 계획 등을 발표했으나, 아직 온전히 이행하지는 않음.
10	○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 전통시장 근처 일정구간 1시간 노면주차 허용	○	*중소기업청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주차장 건립 신청 공모 중이며 건립을 위한 예산도 배정.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는 경찰청, 지자체, 상인회 등 협의로 이행 중

노동 - 비정규직 대책/ 노동시간 단축 등

1	○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	경영성과급 지급 등 기간제법 개정 통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부장관 시정요구 반영한 법률개정은 총선 이전에 시행된 만큼 실제 차별시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두고 평가 필요. 차별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
2	○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한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차별개선하는 제도	X	법안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 진척 없음
3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 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	공약 자체는 이행 했으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자체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대선 공약으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대상 특별 근로감독 실시하고 원청업체 직접고용 행정명령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4	○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유도	X	아직도 공공부문에는 다종다양한 비정규직노동자가 존재함. 정부여당은 2015.09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약에 역행함

5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X	차별시정 공약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조항 포함하면서 국회 통과되지 않음.
6	○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X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으나 관련법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7	○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X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지만, 법률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8	○ 사내하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X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지만, 법률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9	○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X	중소기업의 근로시간감축에 대한 지원은 예전에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 공약사항인 '실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감소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진행되지 않음

10	○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X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차원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노력은 없었음.
11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X	특례업종 축소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 그러나 개정안이 다른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진행되지 못함.
12	○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은 없었으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이행이라 평가
13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채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	공약 자체는 이행. 그러나 정규직의 자율적 근무시간 선택보다 시간제일자리 확대를 놓고 있음.

14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 현행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1/3에서 1/2로 확대	X	신규가입자 지원은 확대했으나 기존 가입자 지원은 줄임. 예산도 축소. 현행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
15	○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X	관련 법안 발의했으나, 진행되지 못함.
16	○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X	진행사항 없음

청년/노인 일자리

1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 '벤처기업 M&A거래소(가칭)' 구축 -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소득공제율 20%→30%로 세제지원 강화) -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입	○	창업 지원 관련 예산 투입 지속.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함.
2	○ 창업실패 낙인 제거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X	핵심정책인 연대보증제도 폐지하지 않음.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있으나 실효성 의문
3	○ 정부. 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 선발 - 멘토들이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 실시 - 멘토는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자체는 이행. 실제 센터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 없음
4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 등록 및 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유도	○	청년인재은행은 설립. 실제 공공기관 의무채용과 민간 확대에 이어졌는지 판단 근거 없음

5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공공부문 약 50개, 우수 민간 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	워크넷은 2012년 이전부터 운영되는 정보망이며 지속적으로 개편, 개선되고 있음. 다만,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6	○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졸업 후 중소기업 미취업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취업 후 이직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희망사다리장학금 운영 중
7	○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공공부문 및 대기업 우선 시행	○	공약 자체는 이행. 임금 피크제와 연계하여 무리하게 추진
8	○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X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법적 연계를 강제하지 않음. 노사정 합의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함.

9	○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 건강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재정지원) 시행 - 고령자에게 적합한 실버카페, 베이비시터 등 5대 'Senior Biz'사업아이템을 선정, 브랜드·마케팅·인테리어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수, 예산 측면에서 공약은 이행 중이나, 실제 월 20만원 임금과 연중 9개월 기간 등의 한계. 용돈 수준의 일자리사업 노인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움
---	---	---	---

민생 -서민금융/ 서민주거/ 통신비/ 교육비 부담 인하

1	○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 미소금융요건을 완화해서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도 대출허용 - 미소금융중앙재단 '12년 업무계획 반영	X	저소득층 저금리 대출 취지에 맞지 않게 이행 중이라 판단.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추심 수단으로 변질됨.
2	○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 햇살론 관련 규정 개정	△	2012.7월 95%로 올렸던 보증비율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보증비율의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이유로 2014년 초 다시 90%로 낮춤(85%→ 95%→90%), 이후 금융회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면서 햇살론의 문턱이 높아짐. 부채상환 어려운 이에게까지 대출지원. 서민금융 공약의 한계
3	○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	공약 이행했으나 은행자금으로 은행이 관리하여 서민금융 지원 공약으로 한계

4	○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X	고교 무상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16년 이후에 고교무상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2016년에도 고교 무상화 관련 법안 또는 예산배정은 없었음.
5	○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	2013년 사립학교법(31조4항) 개정하여 결산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 개선함
6	○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 등록금 동결. 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 장학금 추가 지원	○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4년에 3.6조, 2015년에 3.9조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 2015년 최대 수혜액 520만원으로 상향조치 됨. 대선공약에서 반값등록금 공약 제시. 이는 축소 이행됨
7	○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성적요건 완화 이외 공약 이행. 정부 방침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아직 미이행.

8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 수용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연도별 추가 확대 및 지원 -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 (2%) 자금 지원 확대	△	2015년 전세임대주택 중 대학생 비중 확대, 2016년부터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2천 호) 실시 계획이나, 두 정책 모두 공약보다 규모가 작음. 2015년 10월기준 행복(공공)기숙사와 행복(연합)기숙사 총 수용인원이 6천 명에 불과. 공약 자체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있지 않아 정량적인 평가는 어려움
9	○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소요및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 지원대상 .1순위 :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2010년 주거실태조사 - 184만 가구)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 공급 임대 주택 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임대로 한정하여 임대주택 재고량 증대 .지분형(분납형), 분양전환임대는 제한하여 공급 → 민간 부문 참여	△	현 정부 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전 정권에서 사업승인,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이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보면 실제 증가폭은 매우 낮고,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 내외에 불과.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마저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거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건설을 위해 토지의 용도변경 실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역행
10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 기존 중개기능을 포함한 임차인관리 기능 강화, 시설관리와 임차 기능 분리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이 2015. 8월 국토위대안으로 통과되어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11	○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X	2014년 말 여야 합의로 임대료 안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특위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토부는 완강한 반대입장 표명,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두 명 출석했으나 입장 표명 없었음. 더민주, 정의당 의원발의로 표준임대료 산정안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 중
12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2013년 5월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시행. 이후 2015년 8월11일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담보설정이 어려운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2014년 12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
13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	일명 '뉴스테이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확대됨. 그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

14	○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금리(연2%)의 건설자금 지원 계속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2~4%)의 전세자금 계속 지원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지속 확충	○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연간 2만호를 공급 중.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 용자로 지원 중이나, 그 규모가 적은 편.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시행 중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정한 전세대출 기준금리는 2.85~3.70%.
15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1단계]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 수준 (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전월세 실태조사 실시 [2단계]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 수준 (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소비자물가상승률 3배 초과 인상 금지 * 임대료의 초과 인상분은 무효 ⇒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계약 정보제공 요구권 인정 * 지정기간은 1년 (필요시 2회 연장 가능)	X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동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간 동안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함.

16	○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보증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현행 3,000만원 이하)로서 전세 또는 보증금부 월세입자 중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가구 - 평균보증규모: 가구당 2,000만원	△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의 예상액이 크게 밀리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가입조건(연소득)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임 현재 가입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입자. 연 7~8%의 고금리 대출을 3~4%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
17	○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법정비율 10-50%)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민부담금 완화	X	2012-11-15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법정비율을 30~50%로 상향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29조) 대표 발의.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단됨. 국토부는 뉴타운 보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음.
18	○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요건 완화 - 해제되는 구역중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민에게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	2015년 8월 더민주 김상희, 김경협, 새누리당 이노근,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됨. 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구 등에 대해 지자체 직권해제 등 2016년 4월 시행 예정. * 재정지원 방안인 기반시설 지원(법63조).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법82조) 등은 2012년 2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될 때 만든 조항.

19	○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	2014년 12월 미래부 고시를 통해 '2014년~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이통사간 접속료를 25.6% 인하. 통신비 획기적 인하에는 제한적인 공약
20	○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	2014년 할인율12%로 시행, 2015년 할인율 20%로 확대
21	○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	2014년 LGu+를 시작으로 LTE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여, 통신3사 모두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운영. 다른 정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역할은 적극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움

복지 -보육 / 의료비/ 노인보건 등

1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국공립어린이집 점점 증가하는 추세. '14년도에는 150개소 목표치에 도달. 그러나 83개소가 서울, 30개소는 경기 등으로 지역차가 크게 발생. 2015년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목표로 하던 것이 2016년 예산에는 10% 줄어든 135개소로 하향조정됨.
2	○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0세대 이상	X	이행되지 않음
3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X	이행되지 않음

4	○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	2016년 1월 교육부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학년 확대 발표. 그러나 2016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15년과 같은 2,000억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초등방과후돌봄 확대 편성을 할 수 없음
5	○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 '13년부터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5세 누리과정 도입 -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	0-2세 지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책임 떠넘기기 공약 일부 이행 중이나 누리과정 경우 공약 파기에 해당
6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X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14년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
7	○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016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 인상. 공약보다 적은 액수의 처우개선비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올해 7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운영비가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 이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8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 대상 : 완전·부분(연령·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추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 당뇨병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의약품을 지속 확대 - '12년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 '13년 : 부분틀니 급여, 산전초음파 등 4종 - '14년 이후 : 항암치료제 급여화 등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70세 이상), 치석제거(년1회), 소아선천성질환 일부, 항암치료제 일부 급여화. 그러나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50%로 저소득층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기 어려움. 산전초음파의 경우 2016년 급여화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급여화 추진 대상 중 고도비만치료(위밴드 수술 등), 신개발 치료재료, 의약품 등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 있음. 일부 이행, 일부 축소 이행/미이행
9	○ 공평한 보험료 조정 - 전.월세금 공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13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 보험금 월평균 4천 원, 전월세 소득공제로 월평균 5,600원 정도 경감되는데 그 수준이 미미함. 2013년 7월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어 14년 9월까지 운영하여 소득중심부과체계로 개편하였으나, 재산에 부과하는 기준 미흡,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개편하지 못함. 공약 자체 정량 평가 어려움. 공약 이행했으나 공평한 보험료라는 측면에서 경감수준은 미흡

10	○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200~400만원)를 통합하고, 상한액을 적정 하향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	산정특례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4대중증질환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4대중증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되지 않았음. 3단계로 되어 있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하고, 소득분위별로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확대함
11	○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X	2012년 9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법안 내용 부적절. 법안 처리 논의도 없음.
12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용자 실시 등	X	저소득층 의료비 수급자는 감소 추세, 긴급 의료비 용자 진행하지 않음.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본인 부담 증가됨.
13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계획 마련, '13년 이후 단계적 확충 - '13년 이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노인 확충	○	*2014년 6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개정.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정등급 중 기존 3등급을 3-4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한도액을 구분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도입하여 실시 중. 공약 이행되었으나, 제도 설계상 한계 발생

14	○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매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 2016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수혜자 1인당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 지자체에서 우울과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오히려 중앙정부가 서비스 중단을 종용하기도 함.
조세 재정 -지방재정/ 자본소득 과세 / 비과세 정비 / 징세 등			
1	○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X	진행사항 없음, 향후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벌어질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공약이행 필요
2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	○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조정은 했으나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 금융자산이 최소 1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기준의 하향조정 혹은 폐지도 검토할 여지 있음.
3	○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3% 또는 100억원 이상 → 2%또는7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5% 또는 50억원 이상 → 3.5% 또는 35억원 이상	○	2013년 세법개정에 반영 (유가증권 시장 지분을 3%→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5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4% 이상 또는 50억원→ 40억원 이상)되었으며 점점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추가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도출될 필요있음

4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대안 반영(2015. 12. 2).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는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한 조치로 평가
5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	2013년 세법개정에 반영, 최저한세율 인상 자체는 반가우나 실질적인 증세효과는 미미함.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비롯,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6	○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X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잠정집계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5조 6656억원. 예상치에 비해 2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며 사상최대치. 경제활성화 기조에 휩쓸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보아도 무방한 공약임.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7	○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제고	X	제도 개선의 의지와 방향은 밝혔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와 자료가 부족함. 2012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44.8 - 33.5)하였으나 저소득층(26.2 - 15.1)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8	○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그 자체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 반면 체납에 대한 추징강화는 체감하기 어려움.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로 지정, 추진되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9	○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X	제도 추진의사 외 진행사항 없음
남북관계 - 한반도 통일노력/ 이산가족 숙원해결 등			
1	○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X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 등 사실상 철회. 일방적인 대북정책 선언이나 발표 수준.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없었음.
2	○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X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급격히 감소. 집권 첫 해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를 조성했으나 2015년에는 첫 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조성된 기금의 집행률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7%대에 그침.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실제 예산책정은 3억원 가량에 불과했고 이 조차도 집행된 액수도 1억3900만원에 그침.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역시 2014년과 2015년 총 600억원 가량 배정이 되었으나 10억원도 사용되지 못했음. 전체적으로 남북대화, 교류협력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진행됨. 2016년 북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중단에 이름.

3	○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 북한인권법 제정 등	X	박근혜 정권 3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평균 214억원. (이명박 정부 첫째 1,163억원)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전히 전무함.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김대중 정부 이래 최저치 기록. 실질적 북 인권 개선 노력은 후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시도,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 기존 정책보다 후퇴
4	○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 6자회담, 남북대화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X	북한 선택폐기 입장 유지. 북핵 6자회담이나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북한의 2013년 3차 핵실험, 2015년 12월 4차 핵실험 실시 등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한 가운데 한반도에는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
5	○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 남북의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교환 추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 등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남북간의 DB 교환이나 전면적 생사확인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

6	○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 이산 1세대 DNA بانک 구축 및 이산가족 유해 안장 지원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근거조항 마련. 2014년 1211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남북협력기금 9억74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지속함. 그러나 사후 유해안장 등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
7	○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X	박근혜 정부 하 2차례 이산가족 상봉 진행. 정례화는 이루지 못함.
8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	2015년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서 남측의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 250명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50명을 포함.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음.
검찰개혁			
1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X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했으나, 특별검사 임명 절차만 정해둘뿐 상설특검이 아니었으므로 사실상 공약파기

2	○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통한 인물 추천, 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진행함. 채동욱 검찰총장 사례처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 제도만으로 한계
3	○ 법무부 파견 제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X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나 법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음. 여전히 법무부 핵심직책을 검찰이 장악. 청와대 편법적 검사파견 여전.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증가추세
4	○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	2014.5.20.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이 경우 등록 거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함)

5	○ 대검 중수부 폐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X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를 폐지. 2016년 1월, 특수수사 역량 약화를 이유로 들어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신설함.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고 평가
6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X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노력 없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해철) 관련 법안 발의했으나, 논의 진척 없음

7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X	대선 이후 2013.5.28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는 국정과제 발표, 2017년까지 '검경간 합리적 역할을 모색한다'는 연차계획을 내놴으나 검경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행된 사항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역시 전혀 추진된바 없음.
---	--	---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1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X	2013.12.27.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입법예고안은 공약대로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음
---	--	---	---

2	○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X	진행사항 없음
3	○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	X	2013.12.27.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4	○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X	인터넷기업 자율정화 기관으로 2009년 출범한 KISO가 있으나 이용자 중심도 아닐 뿐더러 공적규제와 유기적 연계를 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음.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심의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법개정 이루어지지 않음

평가기준 ○ (이행)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평가기준 △ (축소 이행 /평가유보)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에 따른 정책과 예산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평가기준 X (파기, 변질, 진행사항 없음)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관련 입법을 저지한 경우
 - 정책과제: 추진계획만 제시하거나 추진계획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